##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

## 검 토 보고서

## 행 정 문 화 위 원 희
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##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결의안은 2010년 8월 26 일 정지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 어 2010년 9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○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한국인 및 아시아 국가 여 성들의 위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자 한 - 일간의 중요안 현안임.

○ 충청북도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의 끓임없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,

○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 상,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 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며,

O 하루속히 일본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O 충청북도의회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제국 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•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 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적인 인정과 사죄를 촉구함.

○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 도록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 에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, 위안부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관 련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함.

○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, 유엔인 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사과하고 법적 배 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이 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함.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2 차대전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 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납치하 여 성 노예('위안부')화 한 것에 대하여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충 청북도의회가 제안한 것임.

○ 일본군위안부는 1993년 이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총 234 명 의 생존자 중 이미 135명이나 사망하고, 99명만이 생존한 상태이며, 치매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. 2006년 7월 5일에는 당시 생존 자 109명의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상태임.

○ 한일 강제병합 100 년을 맞아 지난 8 월 10 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엄청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 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 는 등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또한, 현행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관계의 국가간 사안으로 중앙정 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으나, 충청북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이와 관련하여 2008년 3월 이후 일본의 다카라즈카 시의회, 기요세 시 의회 등 14 대 시의회에서 "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 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문"을 채택하였으며, 2009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"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"을 채택하였으며, 울산광역시의회에서 2010년 3월에 일 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의 광 역•기초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 지고 있음.

○ 마지막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중앙정부 부서와 국회, 그리고 일본대사관 등 관계단체로 이송하여 충청북도의회가 일본군위안부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지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음.

